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9. 21 선고 2023가단11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

담당변호사 장세훈

변 론 종 결 2023. 8. 31.

판 결 선 고 2023. 9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2. 7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2022. 7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7. 30. D과 사이에 D이 E은행 F지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 54,000,000원, 보증기간 2021. 7. 30.부터 2024. 7. 30.까지, 대출예정금액 60,000,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D은 2021. 7. 30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 F지점으로부터 60,000,000원을 대출을 받았는데,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. 11. 29. E은행에 55,373,2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차전285호로 위 나.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, 2023. 1. 26. 위 법원으로부터 “D은 원고에게 55,706,393원 및 그 중 55,102,530원에 대하여 2023. 1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3. 4. 6.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 D은 별지 목록 기재 어선(이하 ‘이 사건 선박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0. 2. 1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, 이후 2022. 7. 29.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 앞으로 2022. 7. 29. 위 선박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. 11. 29. E은행에 D의 채무 55,373,26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

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D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바, 이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선박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한다.

2)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선박은 피고의 부친인 G가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선박이다. 따라서 D이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G의 요청에 따라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피고 앞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앞서 거시한 증거들에, 갑 제18호증, 을 제2 내지 7, 9, 10호증 각 기재,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① 이 사건 선박은 G의 딸인 I이 2019. 3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2019. 10. 18.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이후 2020. 2. 19.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던 점, ② D은 2018. 10. 2. 포항시 남구 J, K호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소지의 변경이 없는데, G가 2018. 10. 9.부터 2020. 4. 29.까지 D의 동거인으로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점, ③ G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된 이후인 2020. 2. 25. 및 2021. 11. 10.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선박을 제3자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,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던 점, ④ L 회원명부에 의하면, 선박의 소유자와 실제 회원이 다른 경우가 다수이고, 이 사건 선박도 G의 아들인 피고가 소유자이나 실제 회원은 G로 되어 있는 점, ⑤ 위 L의 회원인 H도 이 사건 선박은 G가 2019년경 I 명의로 매수한 이후 G가 계속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

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선박은 G가 I 명의로 매수한 이후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은 명의수탁자인 D이 명의신탁자인 G에 대하여 부담하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, 이를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하경

별지목록

진수 연월일 : 2003년 06월 23일

어 선 번 호 :

어 선 종 류 : 동력선

어 선 명 칭 :

선 적 항 : 포항시

선 체 재 질 : FRP

중 톤수(톤) : 4.99

기관의 종류, 마력 및 대수 : 선박용디젤기관 360.00마력 1대

추진기의 종류와 수 :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

